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 제 정 : 1996. 8.26.
- 개 정 : 1998. 5.25.
- 전면개정 : 2000.10. 9.
- 개 정 : 2005. 1. 7.
- 개 정 : 2006. 5. 1.
- 전면개정 : 2008. 5.19.
- 개 정 : 2009. 1. 2.
- 개 정 : 2010. 12.1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 인증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이 법 제21조의2, 영 제27조의2제1호에 따른 인증업무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원 업무범위) 기술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환경표지인증기준의 관리
3. 환경표지인증기준의 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표지의 인증
5. 환경표지 인증제품 등의 사후관리
6. 환경표지제도 및 인증제품의 홍보
7. 환경표지 인증제품 등의 환경성 향상 및 평가를 위한 시험·분석 업무
8.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표지대상제품”(이하 “대상제품”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품 전과정 고려시

상대적으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영 제24조 및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제품군을 말하며, 환경표지 인증대상을 말한다.

2.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3. “환경표지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라 함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기준의 적합여부 등을 검증하는 과정을 말하며, 최초인증과 기인증제품의 인증기간 연장을 위한 갱신인증을 포함한다.
4. “신청수수료”라 함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부담하는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5. “사용료”라 함은 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하는 인증관련 운영경비·홍보비 등 경비의 일부로서,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6. “사후관리”라 함은 인증제품의 지속적인 인증기준 준수여부 관리 및 환경표지 무단사용 조사 등을 말한다.
7. “무단사용”이라 함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환경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이에 대한 광고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8. “파생제품”이라 함은 기 인증제품이나 신청제품 중 기본이 되는 제품(“기본제품”이라 한다)과 구성원료, 용도 및 성능은 동일하나 단순하게 디자인 또는 색상, 판매처 등의 변화로 상표명이 다른 제품을 말한다.

제2장 대상제품 선정

제4조(선정위원회 구성)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24조 및 규칙 제35조에 따른 대상제품 선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 7인 이상 10인 이내로 대상제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 전문위원 중 당해 대상제품의 품질 및 환경적 특성에 대한 전문가

2. 제품의 생산·유통·소비관련 정보획득이 용이한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 단체의 관계자
 3. 환경부 등 관계 부처의 관계자
 4. 기술원의 담당 부서장
 5. 그 외 기술원장이 지정한 기술원의 직원
 6.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가
- ②선정위원회는 전체 구성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 ③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이하 “선정위원장”이라 한다) 선정위원 중에서 기술원장이 임명한다.
- ④선정위원회의 간사는 기술원의 직원 중에서 기술원장이 지정한다.

제5조(선정위원회 기능)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상제품으로 제안된 제품군에 대한 선정의 적정성 검토
2. 관계부처 또는 기술원장 등이 필요로 하는 제품군에 대한 선정의 적정성 검토
3. 그 밖에 대상제품의 선정과 관련된 주요사항 검토

제5조의2(선정내부검토위원회) ①기술원장은 이미 유사 품목에 대하여 선정위원회 상정·검토 사례가 있거나 선정위원회 구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내부검토위원회에서 제안된 제품군에 대한 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판단할 수 있다.

②선정내부검토위원회는 기술원의 각 부서장 및 선임급 이상의 전문연구직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선정내부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원의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간사는 담당 실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

제6조(대상제품 선정시 고려사항) 선정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상제품 선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증기준 개발가능성 및 계량적 측정가능성
2. 공공기관의 수요 및 당해 제품의 보급확대 가능성
3.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환경정보 왜곡 가능성
4. 환경개선 잠재성 및 시급성
5. 주요 이해관계자 반응

6.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선정제안제품 등 평가) ①선정제안제품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기초조사를 거쳐, 제6조제1호 내지 제5호에 부합여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시장현황(생산업체 및 사업자단체 현황, 생산규모, 주요 수요처 및 유통체계, 제품 가격구조 등)
2. 제품관련 관계법령 및 정부의 정책사항
3. 각국의 시행사례 및 인증기준
4. 제품의 환경성 및 품질관련 사항
5.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는 선정위원회 참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적합판정으로 결정한다.

③선정위원장은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기술원장에게 보고하고, 기술원장은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선정위원장은 제1항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제안제품 등 인식도 조사) 기술원장은 제7조의 제안제품 등의 선정 평가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산자·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사할 수 있다.

1. 제품의 인지도
2. 대상제품 선정의 필요성
3. 대상제품 인증시 구입가능성
4. 대상제품 인증참여 가능성
5.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대상제품 확정) ①선정위원장은 제7조 내지 제8조에 의하여 평가조사결과 내용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의 환경개선효과 및 품질관련 사항

2. 인증기준 설정의 기본 방향
3.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기술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기준위원회에 인증기준 개발을 의뢰한다.
- ③기술원장은 기준위원회의 인증기준 개발 결과에 따라 규칙 제35조에 따른 별지 제25호서식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대상제품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3장 인증기준 작성 등

제10조(기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기술원장은 영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에 따른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개발 및 관리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준 설정위원회(이하 “기준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 전문위원 중 당해 대상제품의 품질 및 환경적 특성에 대한 전문가
 2. 제품의 생산·유통·소비관련 정보획득이 용이한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 단체의 관계자
 3. 환경부 등 관계 부처의 관계자
 4. 기술원의 담당 부서장
 5. 그 외 기술원장이 지정한 기술원의 직원
 6.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가
- ②기준위원회는 전체 구성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③기준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준위원 중에서 기술원장이 임명한다.
 ④기준위원회의 간사는 기술원의 직원 중에서 기술원장이 지정한다.

제11조(기준위원회 기능) 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증기준안의 작성 및 관계부처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2. 인증기준 개발을 위한 제품의 시험·분석·평가 및 현장실사
3. 인증기준 개발과 관련된 제반 사항 검토·심의
4. 인증기준 관리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인증기준과 관련하여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인증기준 구성항목) ①인증기준안을 작성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용범위
2. 용어의 정의
3. 인증기준
 - 가. 환경관련 기준
 - 나. 품질관련 기준
 - 다. 소비자 정보
4. 시험방법
5. 인증사유

②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작성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제조,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있어서의 환경관련기준 설정
2. 국내외 품질관련 규격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품질관련 기준설정
3. 과학적·객관적, 논리적 근거를 토대로 한 기준설정
4. 설정된 기준에 대한 측정·분석방법 등

제13조(인증기준 요소선정 등) ①기준위원회 위원장은(이하 “기준위원장”이라 한다) 인증기준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분석하여 인증기준에 필요한 요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외국의 인증기준
2. 환경특성과 관련한 시험 및 연구자료
3. 품질유지와 관련한 시험 및 연구자료
4. 소비자 정보와 관련한 자료
5. 인증기준의 검증을 위한 시험검사방법 등

②기준위원장은 제1항에서 선정된 인증기준 요소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시험·분석 및 시장조사를 기술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인증기준안 마련) ①기준위원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 및 시험·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증기준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준안은 대상제품에 대한 선택성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대상제품별 인증기준안은 기준위원회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기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인증기준안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평가결과를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기준안 개요
2. 인증기준 요소별 조사·분석 데이터 정리 및 설정의 합리적 근거
3. 인증기준안
4. 대상제품 견본품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이해당사자 의견수렴) ①기술원장은 인증기준안 작성시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생산자 또는 그 단체관계자
2. 소비자 또는 그 단체관계자
3. 관계부처 및 국·공립·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관계전문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기술원장이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수렴 7일 이전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인증기준 보고 등) ①기술원장은 기준위원회가 작성한 인증기준안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이를 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술원장은 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준이 고시된 경우 이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인증기준 관리) ①기술원장은 이해관계자가 구체적 개정 사유 및 개정안을 첨부하여 인증기준 개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의하여 기준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증기준 개발 절차에 준하여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기술원장은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없어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증기준 개정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에서 설정된 규제기준이 인증기준보다 강화된 경우
2. 시행중인 대상제품 중 인증제품이 시장에서 변별력을 상실한 경우
3. 제품의 환경성 및 품질과 관련된 기술의 혁신적인 진보가 이루어진 경우

4. 외국 인증기관과의 상호인정 협정 등 국제표준 및 국내의 관련 제도 등과 연계성이 필요한 경우
 5.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후 매3년이 경과한 경우
- ③기준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결과 인증기준의 개정 또는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안을 마련하여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술원장은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인증받은 제품의 제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인증 절차

제18조(심의위원회 구성) ①기술원장은 법 제17조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또는 인증취소 등의 심의를 공정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 7인 이상 10인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 전문위원
2. 기술원의 담당 부서장
3. 그 외 기술원장이 지정한 기술원의 직원
4.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가

②심의위원회는 전체 구성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기술원장이 지정한다.

④심의위원회의 간사는 기술원의 직원 중에서 기술원장이 지정한다.

제19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청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적합여부 판정
2. 인증제품 사후관리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취소 여부 판정
3. 그 밖에 환경표지 인증과 관련하여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의2(심의내부검토위원회) ①기술원장은 당해 제품과 동일 용도의 제품에 대한 기 인증사례가 있는 경우, 기 인증제품을 갱신하는 경우 및 기타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내부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제품에 대한 인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②심의내부검토위원회는 기술원의 각 부서장 및 선임급 이상의 전문연구직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③심의내부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원의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간사는 담당 실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

제20조(인증심사) 기술원장은 인증을 얻고자 하는 자가 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1. 규칙 제2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의 충족 여부
2. 제조공장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제조공장별 별도 신청 여부
3. 인증을 받으려는 자와 당해 제품의 소비자 피해·보상 책임 일체를 가진 자의 동일 여부
4.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대상제품 해당 여부
5.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인증기준 적합 여부
6. 그 밖에 신청제품의 환경성 및 품질에 대한 지속 유지 가능성

제20조의2(현장심사) ①제20조의 신청제품에 대한 현장심사는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 제3조의 인증기준에 따른다.

- ②제1항과 관련하여 신청제품이 위탁생산되는 경우는 위탁생산업체 제조공장을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 ③제1항과 관련하여 신청서비스가 사업장 외부에서 실시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 현장을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공인시험·검사기관) ①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공인시험·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시험·검사기관을 말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인정을 받은 공인시험·검사기관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의하여 인정한 공인시험·검사기관
 3. ISO/IEC 17025의 규정에 적합한 해외 공인시험·검사기관
- ②제1항과 관련하여 기술원장은 인증을 위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함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심의의뢰서 작성 등) 기술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뢰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항의 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인증심의의뢰하여야 한다.

1.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결과 및 신청업체 제출서류
2. 제품 사양 및 특장점 등 신청제품 설명자료
3. 그 밖에 인증심의회와 관련하여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인증심의) ①기술원장은 제22조에 의하여 인증심의회를 의뢰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심의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 인증사례가 있거나 심의위원회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심의내부검토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심의평가표를 작성하여 기술원장에게 제출한다.

③환경표지 인증여부는 심의위원회 또는 심의내부검토위원회 참석위원의 전원찬성으로 결정한다.

④기술원장은 심의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정책판단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계부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기술원장은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제품 중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자료를 보완하여 차기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다만, 시험·분석이 필요한 경우 시험이 완료된 후에 차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⑥심의위원은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제품 중 인증기준에 적합함은 확인하였으나 승인을 위하여 일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제품에 대하여는 조건부 승인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기술원장은 조건이 충족되면 승인한다.

⑦제3항의 인증여부에 대해 신청인이 이의제기를 하였을 경우 기술원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해당제품을 재상정하여 이의제기한 사항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제23조의2(인증제품 사후관리 심의) ①기술원장은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 조사 결과에서 부적합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증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심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심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분석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내부 보고 후 종결할 수 있다.

- ②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개최전에 해당 업체에게 부적합 사항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심의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심의평가표를 작성하여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부적합 제품에 대한 인증취소여부는 심의위원회 참석위원의 전원찬성으로 결정한다.
- ⑤기술원장이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업체 및 관계부처 관계자를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⑥심의위원회 평가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한 해당업체 소명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원장은 생산현장 조사 및 시험·분석을 다시 실시할 수 있다.
- ⑦제6항에 따른 추가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 업체에서 부담한다.

제24조(결과통보 및 사용료) ①기술원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사용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를 포함한다)과 신용카드결제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제24조의2(처리기간) 처리기간은 환경표지 인증을 얻고자 하는 자가 규칙 별지 제 23호서식의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인증결정일까지를 말하며, 처리기간은 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30일로 한다. 다만,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기간 및 제20조에 의한 서류보완 및 수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5조(파생제품 등록) ①기술원장은 인증을 얻은 자가 기 인증제품과 구성원료, 용도 및 성능은 동일하나 인증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하게 디자인 또는 색상, 판매처 등의 변화로 상표명이 변경되는 경우 기 인증제품(“기

본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파생제품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기술원장은 변경 내용이 인증기준에 영향을 주는 경우 그 사유를 붙여 반려할 수 있다.

- ②제1항과 관련하여 기술원장은 파생제품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인증기준 적용시 변동 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제품의 구성원료, 성능, 규격 등의 비교 자료를 별지 제3호 서식의 파생제품 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표기된 사항 중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별표1(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책임을 가진 자가 다른 경우에는 파생제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의2(동일제품·제조원 인정) ①기술원장은 인증을 얻은 자와 계약 등을 통하여 기 인증제품에 대한 책임을 추가로 확보한 자가 당해 제품에 대한 인증을 별도로 얻고자 하는 경우 기 인증제품의 시험성적서 및 제출서류 등을 활용하여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 제품에 대한 책임 여부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별표1(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 ②다만, 동일제품·제조원 인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종료일은 기 인증제품에 따르며, 기 인증제품이 인증기간을 연장하지 않거나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동일제품·제조원 인정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③제1항과 관련하여 기술원장은 동일제품·제조원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기 인증제품과 동일제품·제조원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동일제품제조원 인정신청서와 함께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 ④동일제품·제조원 인정을 위한 인증심의는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심의내부검토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26조(환경표지 인증 계약 및 인증서 발급) ①기술원장은 제24조에 따라 환경표지사용료를 납부한 제품에 대해 별표의 환경표지 인증 약관에 의하여 신청인과 인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인증결정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되도록 인증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표지 인증 효력이 소멸된다. 다만, 인증등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2개월 이내에 인증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 ②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간은 인증결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동일제품·제조원 인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종료일을 기 인증제품과 동일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 ③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 24호서식의 환경표지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④기술원장은 환경표지 인증을 얻은 자가 정부 및 공공투자기관등의 의무구매를 위해 우수제품선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인증제품에 대하여 종합기술평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기술평가서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의2(인증기간 연장) ①기술원장은 인증을 얻은 자가 기 인증제품에 대한 인증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당해 제품을 갱신 신청할 수 있도록 인증종료일 90일 이전에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 ②기술원장은 갱신인증을 위하여 최초인증과 동일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인증 후 홀수번째 갱신인증에서는 구성원료, 용도, 성능, 외관 등에 대한 변동 여부를 신청업체 제출서류로 확인하여 기 인증제품과 동일한 경우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제2항과 관련하여 인증기간 중에 당해 제품에 영향을 주는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이 변경된 것으로 기술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최초인증과 동일한 절차로 심사하여야 한다.
- ④갱신인증을 위한 인증심의회는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심의내부검토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 ⑤환경표지 인증 계약 및 인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제26조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지위승계) ①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

1. 공장을 양도한 경우 그 공장을 양도받은 자
 2.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합병의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 ②기술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계인에게 인증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부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지위승계 사유서
2. 등기부등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 ③기술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인증제품의 상표명, 인증제품의 물성 및 외형 등 제품의 주요사항 및 제조공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승계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이의신청) ①제26조 및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인증제품에 대하여 이 해관계가 있는 자가 기술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조사결과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제2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한 뒤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술원장은 제1항의 재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또는 제품의 인증을 얻은 자)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라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9조(인증서 변경 및 재교부) ①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받은 사항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환경표지 인증내역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술원장에게 변경 또는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기업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변경시
2. 인증제품의 상품명 변경
3. 제27조제1항에 의한 지위승계
4. 인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 등

②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한 다음 적합여부에 따라 변경전 인증서를 회수하여 정정·재교부한다.

③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내역 변경 신청서 접수시 필요 경비에 대한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5장 사후관리

제30조(사후관리 범위) 기술원이 실시하는 사후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제품에 대한 환경성과 품질 등 인증기준의 지속적인 유지상태
2. 환경표지의 표시나 광고내용의 적절여부 확인 및 환경표지 무단사용 사례조사
3.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인증제품 조사) ①기술원장은 인증제품의 인증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하여 매년 사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에는 사후관리의 목적과 범위 및 사유·기간·소요예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기술원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기본계획에 따른 사후관리 조사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인증취소) ①기술원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례를 발견한 때에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환경표지 사용 중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기술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증취소 여부를 판정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원장은 심의위원회 상정 전에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진술 등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기술원장은 인증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증업체에게 통보하고 영 제28조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인증취소 제품의 상표명
2. 인증취소 제품의 제조회사 또는 제조자
3. 인증취소 사유
4. 인증취소 연월일

제33조(환경표지 무단사용 조사) ①기술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환경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법 제34조

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1. 환경표지 무단사용인
2. 환경표지 무단사용 제품의 상표명
3. 실물 또는 사진, 홍보물 등 무단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4. 무단사용 조사 경위

③기술원장은 무단사용 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홍보업무 및 전문성 제고 등

제34조(환경표지제도 및 인증제품 홍보) ①기술원장은 환경표지제도와 인증제품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환경표지제도에 관한 여론조사
2. 환경표지제도의 개요, 대상제품의 제안절차, 인증기준, 인증절차, 인증제품내역 그 밖에 환경표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자료집의 발간·배포
3. 인증기준이 고시된 경우 이를 관련기관·단체·기업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홍보
4. 환경표지 인증을 한 경우에는 해당제품을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우선구매기관에 통보하고, 관련기관·단체·기업 등 그 밖에 수요처 등에 안내
5. 인증제품의 전시회 개최. 이 경우 원장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전시물품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 그 밖에 인증제품의 생산 및 유통현황 조사 등 환경표지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②기술원장은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환경표지를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

1.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판매시설임을 알리고자 하는 경우(백화점 등 복합판매시설인 경우에는 직접 판매하는 곳에 한함)
2. 언론기관에서 환경표지제도를 소개 또는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각종 간행물 등에 환경표지를 소개 또는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

우

4. 그 밖에 환경보전시책의 홍보 및 계도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품 및 제품 홍보용 카탈로그 등에 환경표지를 표시하는 등 영리목적의 광고·선전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5조(시험·분석 등 실시) ①기술원장은 법 제26조제1호 내지 제5호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대상제품의 선정 및 인증기준 제·개정에 필요한 시험·분석·평가
 2. 인증신청 제품 및 인증제품의 인증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분석·평가
 3. 환경을 고려한 제품설계·생산기법의 개발 및 보급 확산
 4. 환경표지제도 발전을 위한 과대포장·내용물 등 제품의 구성요소 또는 제품의 환경성 조사연구 및 관련업체의 요구에 의한 시험 등 기술지원사업
 5. 국내외 시험검사기관과의 협력 등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제1항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기술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교육훈련 실시) 기술원장은 환경표지제도 활성화 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전문위원 위촉 및 운영

제37조(전문위원 위촉) ①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전문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대상제품 선정의 타당성 검토
2. 인증기준의 제·개정
3. 환경표지 인증심의
4. 제품의 전과정평가 및 환경성 분석방법 검토
5.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에서 기술원장이 위촉한다.

1. 국·공립·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책임연구원급(팀장) 이상인 자
2.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의 책임연구원급(팀장) 이상인 자
3. 대학에서 7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한

자

③전문위원의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기술원장은 위원이 해촉을 원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각종 위원회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37조의2(심사전문위원) ①기술원장은 전문위원으로 위촉한 자 중 환경표지 인증 및 사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심사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은 제37조제2항과 같다.

②심사전문위원은 환경표지 인증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38조(수당 등 지급) 기술원장은 인증관련 업무수행에 참여하는 전문위원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업무협정) 기술원장은 제13조 제2항, 제21조, 제35조, 제36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 및 관련 연구기관, 관련 단체 등과 업무협정을 맺을 수 있다.

제8장 그 밖에 사무관리 절차

제40조(제안서 및 신청서 접수) ①기술원장은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제안자로부터 대상제품 선정제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기술원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1조(서류 보완) ①기술원장은 제40조에 의한 선정제안서류 및 인증신청서류의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 및 신청인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및 수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기술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차에 걸쳐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붙여 제안자 및 신청인에게 반려했

수 있다.

제42조(제안 및 신청 철회) 기술원장은 제안자 및 신청인이 제안 및 신청사항의 철회를 요청한 때에는 관계서류 및 신청수수료를 반환한다. 다만, 현장실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기 납부한 신청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3조(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 기술원장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4조(사용료 반환) 기술원장은 환경표지를 인증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잔여기간분의 사용료를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1. 영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폐지로 인증 취소된 경우
2. 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환경표지 사용인증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제9장 보 칙

제45조(비밀누설 금지 등) 기술원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전문위원회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업체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위탁업무 추진시 환경부와의 협의) 기술원장은 환경부의 예산이 수반된 위탁업무 및 국고보조 사업과 관련한 인력·조직·예산의 운용계획은 사전에 환경부와 협의해야 한다.

제47조(운영세칙) 기술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 및 그 밖에 인증업무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품질매뉴얼 제정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996. 8.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협회 운영규정 중 제5호 민원서류처리규정 및 제11호 실무위원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실무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촉된 실무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5.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위촉된 심의위원은 이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10.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5.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갱신인증의 횟수 적용) 이 규정 시행 후 첫 번째 갱신인증을 최초인증 후 첫 번째 갱신인증으로 본다.

부 칙 (2010. 1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